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86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 김병주 • 이기헌 • 추미애

윤후덕 · 김준혁 · 이언주

박선원 · 강준현 · 정성호

부승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병적은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병역면제 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병역면제 처분의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등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있다.
-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 리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 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및 제65조제1항제1호및 제65조제1항제1호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이후에도 그 질병·심신장에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의 기간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u><신 설></u>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u>제5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
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u>기 없으면 표정에 떠나야 한다.</u>
<u> </u>
<u> </u>
<u> </u>
<u> </u>
<u> </u>
①제1항, 제5항 및 제6항